

**「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」
2025년 의료기기 부품·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**

산업통상자원부 「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」을 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**2025년 의료기기 부품·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**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9월

(재)창원산업진흥원 원장

필독 사항

-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창원시 지방자치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**창원시의 방침을 우선**하며 ‘창원시 의료바이오 혁신기업 육성계획’, 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’, ‘지방보조금 관리기준’, ‘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’, ‘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,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’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함

-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% 이상 필수
- 사업비는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, 시험인증비 등 직접 수행비를 중점적으로 편성
- 인건비는 사업비의 30% 이내, 간접비는 5% 이내 편성 권고
- 4대 보험 기관부담금, 퇴직급여 총담금 불인정. 기존 인력의 100% 참여율 계상 불인정
- 외부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불인정하며, 인건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음
- 자산확보성 구매(기계장비, 단순 제조·시험·측정 장비, 컴퓨터, 3D 프린터, 차량, 범용 소프트웨어 등 사업 종료 후에도 유형자산으로 사용가능하며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장비)는 지양함
-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외출장(박람회 참가 등) 지양
- 인건비, 수당을 제외한 인건비성 비용(개발비, 제작비, 노무비 등)은 불인정 (외주 시 용역비로 집행 및 세무 산정 필요)

- ‘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제 1장 제 3조(적용범위) 2항’에 의거하여 동 지침 적용 예외 사업
- 의료·바이오 기술개발을 통한 “사업화”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
- 의료기기 부품모듈 지원사업은 시작품 연구개발 지원과 시제품 연구개발 지원 2가지로 구분
 - 사업 범위, 지원규모, 지원기간 등이 상이함
- 시제품 연구개발의 경우 선정 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
- 과제 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가능
- 선정 전·후 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, 참여제한,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
-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- [붙임] 지원제외 대상 목록 확인 필수

1.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:** 창원시 전략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의 부품 모듈 국산화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의료 기기 부품 제조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함
- **사업명:** 2025년 의료기기 부품·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
- **모집기간:** 2025. 9. 25.(목) ~ 11. 24.(월)
- **지원내용:** 의료기기 부품 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관련 시작품 및 시제품 연구개발 지원
- **지원대상:** 관내 의료·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·후방 기업 혹은 컨소시엄
 - ※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(연구소) 보유기업

〈지원 제외대상〉

- 서류 미비, 허위사실 제출 등이 발견되는 경우
- 과제 중복성에 해당하는 경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
- 기타 창원산업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2. 지원내용

- **지원규모:** 총 7개사 내외(시작품 5개사, 시제품 2개사)
- **지원범위 및 내용**

구분	세부실행과제	지원요건	지원내용		건수 (건)	지원금 (백만원)
1	의료기기 부품모듈 시작품 연구개발 지원	TRL 4~5	필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작품 연구개발 지원 - 국산화 및 기술개발 개념정립 및 검증이 끝난 품목의 시작품 설계 및 연구개발 지원 	5	250 기업당 최대 5천만원
			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성능 평가분석비 지원 - 시작품 성능평가(비임상포함) 분석비 지원 		
2	의료기기 부품모듈 시제품 연구개발 지원	TRL 6~8	필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- 개발이 완료된 유망 품목에 대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, 제품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	2	800 기업당 최대 4억원
			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성능 평가분석비 지원 - 시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인증 및 시험평가 분석비 지원 • 컨설팅 지원 - 개발 제품 품질기준,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등 개발 지원 		

※ 시작품 혹은 시제품 지원에 관련 추가 보조지원 가능(예: 시제품제작+시험평가지원)

※ 신청단계 기술성숙도(Technology Readiness Level)

단계	TRL1	TRL2	TRL3	TRL4	TRL5	TRL6	TRL7	TRL8
내용	기본원리	개념정립	개념검증	시작품		시제품	비임상	임상
	기초이론 정립	기술개념 정립	특허출원/ 기본성능 검증	설계 제작	성능평가 (비임상 포함)	설계제작 성능평가	안전성 유효성 평가	인·허가

1. 의료기기 부품·모듈 시작품 연구개발 지원

○ 지원내용: TRL 4~5단계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부품·모듈 시작품 연구개발 및 시험 지원

○ 지원규모: 5개사(기업당 최대 5천만원)

- 지원금은 최종 결과평가 이후 결과 및 증빙에 따른 후정산
- 기업부담금: 지원금의 25%이상 부담 * 부담금 현금 100% (현물 불인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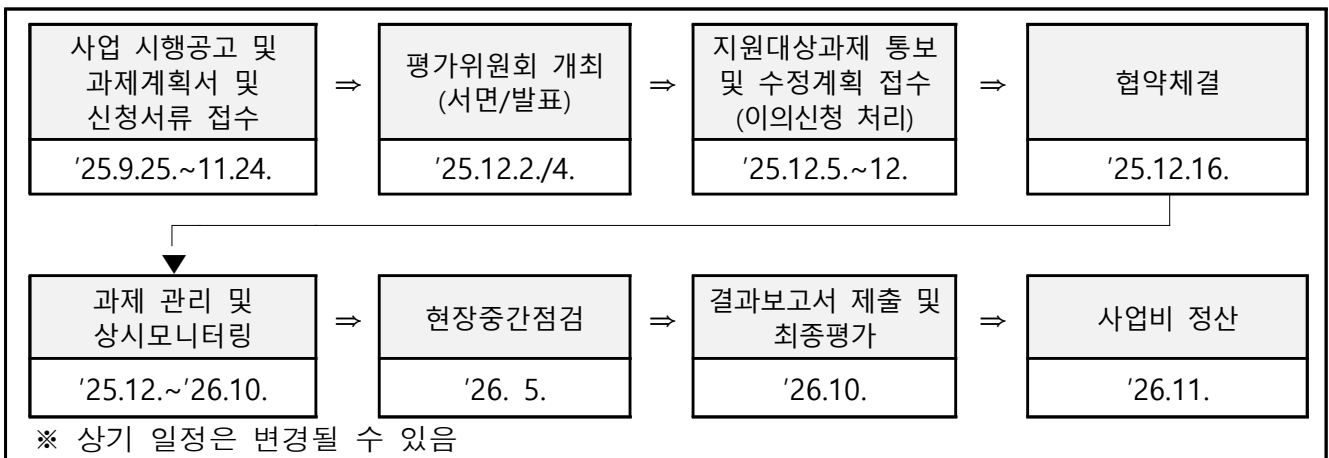
구분	총사업비(가)	시지원금(나)	민간부담금(다)
구성 기준	(나)+(다)	선정금액	(나)의 25% 이상
(예시)	62,500,000	50,000,000	12,500,000

○ 지원기간: 2025. 12. ~ 2026. 10. (10개월)

○ 지원요건

-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법인기업
-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
-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·후방(예비) 기업
- 지원제외대상*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(*세부사항 붙임3 참조)

○ 지원절차 및 일정



2. 의료기기 부품·모듈 시제품 연구개발 지원

○ 지원내용: TRL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부품·모듈 시제품 연구개발 및 시험 지원

○ 지원규모: 2개사 또는 컨소시엄(기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4억원)

- 기업부담금: 지원금의 25%이상 부담(현금+현물) * 부담금 내 현금비율 10% 이상

구분	총사업비(가)	시지원금(나)	민간부담금		
			총액(다)	현금(라)	현물(마)
구성 기준	(나)+(다)	선정금액	(나)의 25% 이상	(다)의 10% 이상	(다)-(라)
(예시)	500,000,000	400,000,000	100,000,000	10,000,000	90,000,000

- 지원금은 선정 시 협약체결 후 80% 선지급, 최종 결과평가 이후 잔금 20% 정산

- 선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

※ 보증기간: 사업예정기간 + 6개월

※ 제출기한: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

※ 유의사항: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 취소

○ 지원기간: 2025. 12. ~ 2026. 12. (12개월)

○ 지원요건

-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법인기업

-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

-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·후방(예비) 기업

- 컨소시엄 지원의 경우 주관기업은 위의 지원요건을 따르며, 참여기업은 관내·외 원천기술보유 기업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컨소시엄 예시: 기업+대학, 기업+병원, 기업+연구소, 기업+대학(병원 혹은 연구소)+대학(병원 혹은 연구소), 기업+대학(병원 혹은 연구소)+기업, 기업+대학+연구소+병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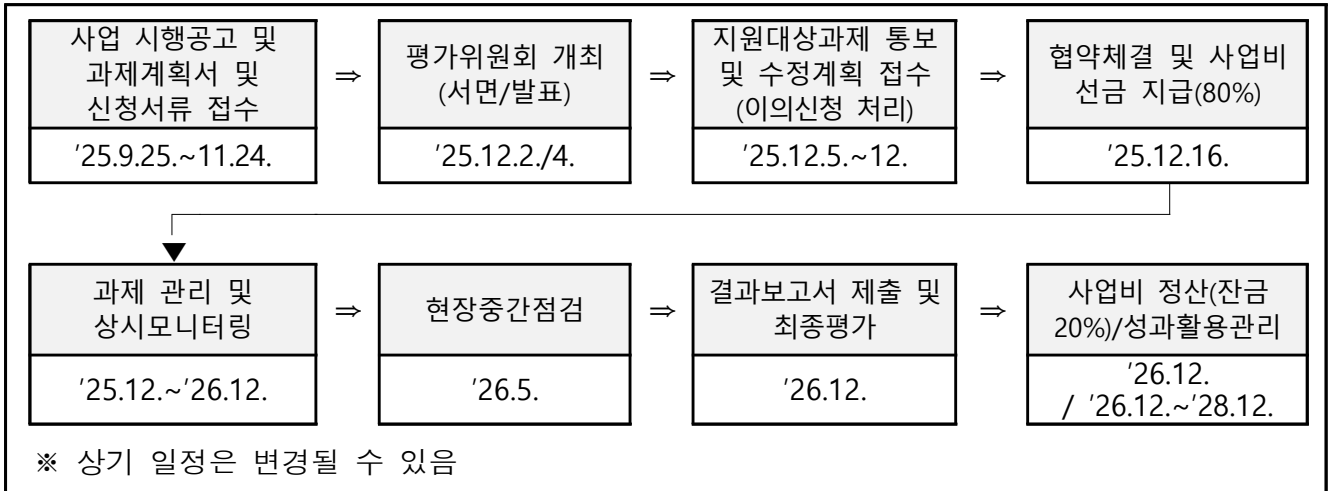
- 지원제외대상*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(*세부사항 붙임3 참조)

○ 성과달성 목표

- 제안서 목표 정량적 지표(KPI) 이상 성과 달성

- 지식재산권(특허 등) 1건 출원, 사업기간 내 신규 고용 1명 이상 달성

○ 지원절차 및 일정



3. 선정평가

○ 평가일자: ^{예정} 2025. 12. 2.(화)/4.(목) (세부 일시 및 장소는 접수자 대상 별도 안내)

○ 평가방법: 사전검토, 서면평가, 발표평가(PPT발표)를 통해 선정

○ 선정평가위원회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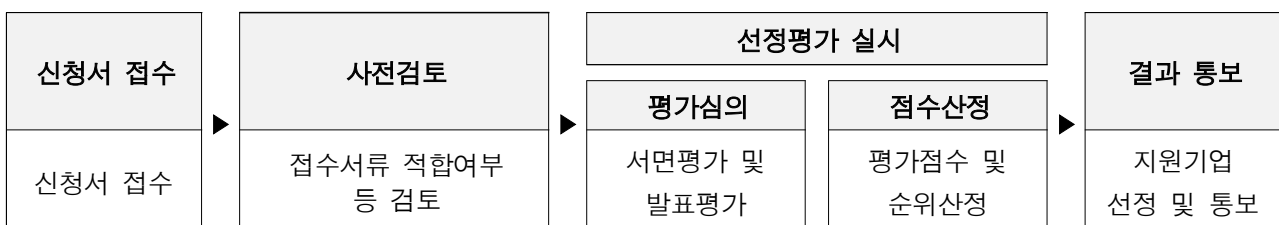
- 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- 선정위원회는 산업·연구계·관련학과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로 구성

〈평가위원 선정〉

- 고유번호(1~43)를 부여한 예비위원명부 작성 후 봉인 및 보안유지
- 감독관 입회하에 43명 중 추첨을 통한 21명 예비명부 작성
-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21명 중 고유번호 추첨 및 확인
- 추첨은 제출 접수 순으로하며 추첨된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에 대하여 개별연락을 통해 평가위원회 개최 통지
- 평가위원 사정에 의해 참여불가 시 차순위 평가위원 연락 후 평가위원회 최종 구성

구 분	예비위원 고유번호 작성	고유번호 추첨 및 확인	개 봉
평가위원 구성일정	2025. 10. 24.(금)	2025. 11. 25.(화)	2025. 11. 25.(화)
책임자	임성민	홍상연	임성민

○ 선정절차



- (1단계)서류심사: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

- 서류심사는 기업의 지원조건 충족 여부, 필수제출서류 누락여부, 재무 건전성 등의 지표로 합격, 불합격으로만 판단

1.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
2. 신청자격 검토
 - 1)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
 - 2) 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활용)
 - 3)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- 4) 참여 제한 여부
 - 5)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 - 6)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

- (2단계)서면평가: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합성, 혁신성, 사업성 등을 평가

-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실시하며, 7인의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로 서면평가 위원회 개최
- 평가표의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,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순위에 따라 3배수 내외 기업 선정
- 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전화 면접 또는 추가 자료제출 요청 가능

- (3단계)발표평가: PPT를 활용한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

- 제안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, 서면평가위원회를 심사한 7인의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로 발표평가위원회 운용(단, 평가위원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)
-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(PM) 포함 3인 이내로 하며, **업체당 35분(발표 15분, 질의응답 20분)** 이내로 진행
- 서면평가점수를 참고하여 평가표의 발표내용과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·평가하며,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의 기업을 고득점순으로 선정
-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는 최고점 1개,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삭하여 점수 산출

$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- 동점자 처리기준

-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① 혁신성 ② 원천성 및 권리성 ③ 기술개발 전략 ④ 사업화 가능성 ⑤ 시장진출전략 ⑥ 의료·바이오 제조산업의 창원집적 ⑦ 가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
- 위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재개최하여 따로 선정함

- 평가결과심의: 평가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등 내부심의를 거쳐 선정 대상 과제 확정
- 최종선정공고: 평가위원 지적사항 등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진행 후 사업추진
-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음

○ 평가지표: 붙임서류 참조

4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2025. 9. 25.(목) ~ 11. 24.(월)까지
- 신청방법: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

< 접속경로 >

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cwip.or.kr>) → 사업신청 → 지원사업 신청 → 모빌리티의료 바이오팀 → 2025년 의료기기 부품·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

※ 직접방문(오프라인 접수) 및 e-mail 접수 불가

○ 제출서류

구분	서 식 명	제출 형태
계획서	과제계획서 (시작품: 계획서 40쪽 이내, 요약본 2쪽 이내 / 시제품: 계획서 70쪽 이내, 요약본 3쪽 이내, 제출서식 참조) ※ 반드시 직인 날인 하여 제출 기술개발전략 로드맵 [사업계획서 붙임4] 시장진출전략 로드맵 [사업계획서 붙임5] 제품생산계획서 [사업계획서 붙임6] 기술개발 제품 요약서 [사업계획서 붙임8]	
적격여부 확인서류 [필수]	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[사업계획서 붙임1] 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동의서 [사업계획서 붙임2] 과제(부문)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 R&D-기업 지원사업 현황 [사업계획서 붙임3]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(명), 중소기업확인서 유사과제 검색결과 확인서(NTIS), 중복과제 확인서약서[사업계획서 붙임9]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(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) ※ 주관기관 필수, 참여기관(영리)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, R&D 투자실적 보유기술 TRL 단계 증빙 서류* * 유효성 평가 통과 증빙서류, 비임상시험 공인시험성적서, 임상시험 신청서 및 증빙 (IRB 등), 품목허가 신청 및 증빙서류 등 기타 TRL단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** 증명자료는 서면평가 시 관련내용 검증	한글(HWP)/ 스캔(PDF) 온라인 업로드
추가서류 [해당시]	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&D 투자 실적 증빙 기술·품질 인증 및 인정 서류 국내특허(등록 및 출원) 국제특허(등록 및 출원, PCT 포함) 참여(기술제공) 기업 관계자의 국내·외 논문 R&D 전담 증빙(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, 전담부서(인력) 비중 증빙)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창원시 및 경상남도 기업(기관, 연구소, 병원 등) 연계 방안 [사업계획서 붙임7] 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 체결 서류	

※ 증빙 제출서류만 선정평가 점수에 반영

5. 유의사항

○ 유의사항

-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
- 신청서, 첨부서류를 모두 **온라인**으로 접수
-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비롯한 첨부서류 전체가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, **마감시간 이후 접수문서는 불인정**
- 회원가입,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하루 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 2~3일전 과제가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
-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보유기간(선정 후 5년간) 이후 파기 예정
- 지원제외 대상 목록 확인 필수
-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취소가 될 수 있음
- 선정평가에 의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 전·후 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, 참여제한,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
- 사업비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, 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, 「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,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」에 맞도록 사용 관리되어야 함
- 창원시 방침을 우선하며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업비 관리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에 준하여 집행 및 관리되어야 함
- 사업비는 다른 자금과는 **별도 통장**으로 관리하여야 함
- 선정기업 정산 전 외부 회계사무소의 **회계감사보고서** 제출 *요율 붙임 참조

○ 후속관리

- 사업계획서와 사업 결과평가 및 성과에 따라 **후속사업(의료·바이오 첨단기기 시제품 연구개발·고도화 지원사업 등) 신청시 우대** *결과평가 우수(80점) 이상 시 가점 부여
-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 말에 성과활용 실적이 포함된 ‘**성과활용보고서**’를 제출하여야 함(*연구개발 후속 실적, 매출 증가 실적, 지식재산권, 고용실적 등)
- 연구성과를 발표할 때는 ‘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첨단의료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’ 및 ‘창원시, 창원산업진흥원’에서 지원하는 **사업의 성과임을 표시**하여야 함
-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(출원·등록)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업이 소유하여야 하며,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(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)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 (예외)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가능
- 본 사업인 **의료기기 부품모듈 시제품 연구개발 지원사업**으로 개발된 기술이 포함된 제품(연관제품 포함)은 **창원시에서 생산*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상품 최초 출시 후 5년간 **창원시 관내에서만 제조**하여야 함
 - 상품 최초 출시 후 10년간 **핵심제품은 창원시 관내에서 제조**하여야 함
 -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**3배의 위약금**을 납부하여야 함
 - * 세부기준은 [붙임 9] 기술개발 제품 협약서에 명기

6. 문의처

○ 문의처

구분	담당자1	담당자2
이름	임성민 선임연구원	이황우 사원
연락처	☎055-716-8772	☎055-716-8774
이메일	slim@cwip.or.kr	hw3473@cwip.or.kr

* 문의사항은 e-mail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끝.

[붙임1] 선정평가표

○ 서면평가표(안)

영역		평가 주안점	배점
기술성 (40)	혁신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한 의료·바이오 첨단기기가 기존 기기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? • 해당 기술 및 제품이 창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,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? ※ 사업계획서에 혁신성에 대한 내용 반영 •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기술·품질인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? •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&D 투자실적은? • AI·빅데이터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? ※ 필수서류: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&D 투자실적, 기술·품질인증 서류 	15
	원천성 및 권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의 원천성이 강하고 권리성의 확보가 잘되어 있는가? ※ 사업계획서에 원천성과 권리성에 대한 내용 반영 ※ 필수서류: 국제특허(등록 및 출원, PCT 포함), 국내특허(등록 및 출원), 제공 기술 관련 최근 5년간 국제논문(참여 인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) 등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	15
	기술 개발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개발 계획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는가? •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 조정 방안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? • 제품의 시작품, 시제품의 생산 등을 위한 전담인력 비중은 적절한가? • 의료기기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관련 국책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 수행실적은? ※ 필수서류: 연구소 전담인력 비중, 국책사업 및 지원사업 수행실적(건) 	10
사업성 (60)	사업화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시된 기술의 기술성숙도가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인가? • 사업화에 대한 준비(기술개발정도, 제품제작능력 등)가 잘되어 있는가? ※ 필수서류: 기술성숙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	20
	시장 진출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에 대한 시장분석이 면밀하게 되어 있는가? • 제품의 효율적인 유통 방법과 판매처 확보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? ※ 필수서류: 시장진출전략 로드맵 	20
	의료· 바이오 제조 산업의 창원 집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원시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방안과 투자전략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? • AI 빅데이터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활용방안이 제시되었는가? • 창원 관내 기업(기관, 병원 등)과의 연계방안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? •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가 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? ※ 필수서류: 제품생산계획서 ※ 추가서류: 창원시 및 경상남도 기업(기관, 연구소, 병원 등) 연계방안 	20

○ 발표평가표(안)

영역		평가 주안점	배점
기술성 (70)	혁신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한 의료·바이오첨단기기가 기존 기기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? · 해당 기술 및 제품이 창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,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? ※ 사업계획서에 혁신성에 대한 내용 반영 · 과제계획서의 내용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인가? · AI·빅데이터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? ※ 필수서류: 과제계획서, 과제계획서 요약본 	25
	원천성 및 권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품의 원천성이 강하고 권리성의 확보가 잘되어 있는가? ※ 사업계획서에 원천성과 권리성에 대한 내용 반영 ※ 필수서류: 국제특허(등록 및 출원, PCT 포함), 국내특허(등록 및 출원), 제공 기술 관련 최근 5년간 국제논문(참여 인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) 등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	25
	기술 개발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개발 계획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는가? ·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 조정 방안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? · 제품의 시제품, 시제품의 생산 등 연구비 투자 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? · 의료기기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걸림돌(저해요소)을 분석하고,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는가? ※ 필수서류: 기술개발전략 로드맵 	20
사업성 (30)	사업화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시된 기술의 기술성숙도가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인가? · 사업화에 대한 준비(기술개발정도, 제품제작능력 등)가 잘되어 있는가? ※ 필수서류: 기술성숙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	10
	시장 진출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품에 대한 시장분석이 면밀하게 되어 있는가? · 제품의 효율적인 유통 방법과 판매처 확보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? ※ 필수서류: 시장진출전략 로드맵 	10
	의료· 바이오 제조 산업의 창원 집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원시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방안과 투자전략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? · AI 빅데이터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활용방안이 제시되었는가? · 창원 관내 기업(기관, 병원 등)과의 연계방안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? ·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가 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? ※ 필수서류: 제품생산계획서 ※ 추가서류: 창원시 및 경상남도 기업(기관, 연구소, 병원 등) 연계방안 	10

○ 우대가점 및 감점

구분	우대 및 감점 기준	배점
가점	① 참여기업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경우	3점
	② 진해 지식산업센터 기 입주기업 · 사업지원서 신청 전까지 입주계약 체결 및 관련비용 납부 완료 기업 포함 * 평가 후 현장점검에서 미흡 혹은 부적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	2점
감점	① 평가결과가 “중단(불성실)” 또는 “불성실수행”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(단,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)	-2점
	②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(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)으로 신청하는 경우	-1점

※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, 가점 인정 불가

[붙임2] 지원제외 대상

① 접수서류

- 과제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-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- ☞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

② 중복성 검토

-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 확인하며, 주관 연구책임자에게 중복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
- 연구자는 NTIS(www.ntis.go.kr)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중앙정부 및 타지자체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 - 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 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 → 유사과제 → 유사성 검토
- 창원산업진흥원, 경남테크노파크 등 기관 지원사업 중복 자체 검토(중복과제 확인 서약서 제출)
- 신청한 연구개발과제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기관 지원과제(창진원 포함)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③ 신용 및 기업상태

- 기업이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는 경우 예외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※ 채납·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

<관련 문의처>

- ※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→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- ※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 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)
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 - * 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·의료 분야 과제)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의 경우는 예외
 - ** 참여기관 22~24년, 3년치 결산 재무제표 제출(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(B/S), 비영리기관 제외)
 - ***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3년치를 제출
-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(과제책임자 및 기업체)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 및 협약 해지 조치

④ 기타 사업목적 등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최근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
 - ※ 접수 마감일 이전 체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
-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기업의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가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
 - 기업이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경우
 -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따라 ‘채무 불이행자 명부’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‘채무 불이행자’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, 회생,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 -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의견’인 경우
 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 -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.

[붙임3] 기술성숙도(Technology Readiness Level) 예시

구분	TRL 1	TRL 2	TRL 3	TRL 4	TRL 5	TRL 6	TRL 7	TRL 8
의료기기	(기본원리) · 기초이론 정립	(기술개념/적용분야) · 개념 및 응용 분야 정립	(개념검증) · 특허출원 · 기본성능 검증	시작품 제작		전임상		(임상) · 허가용 임상시험
				(설계/제작) · 시작품 제작	(신뢰성) · 시작품 성능평가	(실험실) · 초기 안전성 · 유효성 평가	(GLP) · GLP안정성 · 유효성 평가	
의료기술			· 의료기술 개발 (진단법, 치료법 등)	· 의료기술 검증	· 의료기술 검증	· 임상시험		
의약품 (신약)	(과학적발견) · 기술개발 초기단계 · 과학적 발견을 통해 신기술 가능성 탐색	(개념설정/정립) · 가설 설정 · 연구계획 · 방법 수립 · 동료전문가검토	(개념검증; POC) · 기초연구, 정보수집 및 분석 · 신약개발 기술성 평가 · 초기후보물질 도출 및 작용기전 파악	(in vivo 검증) · Non-GLP 생체내 (invivo) 안전성 · 유효성 확보	(GLP 검증) · GLP 비임상연구 · 임상용 GMP 공정 확립	(임상1상) · 임상1상 진행·완료	(임상2상) · 임상2상 진행·완료	(임상3상) · 임상3상 진행·완료
생물학적 제제/백신	· 과학적 문헌 리뷰 · 초기 시장조사 결과 평가	· 연구계획 개발 · (동료)평가 · 승인	· 후보 제제/백신에 대한 in-vitro / in-vivo POC	· 지정된 실험실/ 동물모델로 후보 제제/백신의 POC·안전성 입증	· IND 신청을 위한 후보 제제/백신의 충분한 기술적 data 확보	· 임상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1상 data 확보 · 임상 2상으로의 진입 지원	· 임상3상 계획 혹은 대용시험계획 승인	· CBER에 의한 BLA 승인
바이오마커 (Biomarker Readiness Levels)	BRL 1	BRL 2	BRL 3	BRL 4	BRL 5	BRL 6		BRL 7
	· 기초개념 관찰 및 보고	· 바이오마커 평가기술 입증	· 분석적/실험적 개념 검증	· 실험실 환경에서의 요소/시스템 입증	· 관련 환경 (예: 코호트)에서의 시스템 효능 입증	· 모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 테스트 및 입증		· 일반인에 대한 스크리닝/진단 테스트

[붙임4] 회계정산 수수료율(예시)

□ 위탁정산수수료규정

○ 기본보수료

개발 사업비 규모*	정산수수료* (천원)
1억원 미만	987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,185
3억원 이상 5억원 미만	1,515
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1,647
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	1,845
30억원 이상	2,043

* 사업비 규모 : 정부출연금+민간현금의 합 (현물은 포함되지 않음)

* 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금액임

○ 공동참여기관 갯수에 따른 가산금

공동참여기관 수	가산금
0개	가산금 없음
1개	수수료의 10%
2개 이상	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%씩 가산

※ 위탁정산기관 및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변동 가능